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84
----------	-----

2023년 2월 2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2월 6일, 김지향 의원 외 34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지향 의원)

가. 제안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

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두 자녀로 조정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안 제34조제1항제9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하던 것을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자녀 가구”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제1항제9호)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8. (생략)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u>세 명 이상</u>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 14. (생략) ② ~ ⑤ (생략)	제34조(감면) ① ----- ----- ----- ----- ----- 1. ~ 8. (생략)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u>2명 이상인</u>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 14. (생략) ② ~ ⑤ (생략)

■ 국내 출산율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졌고,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0)

- 정부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¹⁾을 수립하고 주거·교육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다자녀가구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외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표 3]과 같이 하고 있음.

[표 3] 서울특별시 각종 요금 다자녀 가구 지원 현황

유형	서비스명	소관기관	신청절차	접수기관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 카드 발급 시 서울시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서울시 (가족담당관)	방문	·신분확인용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 우리은행영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지사
세자녀 이상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서울시 (임대주택과)	방문, 인터넷	sh공사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산생아의 난청진단	보건복지부	방문	시군구 보건소

1)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0.12.15.

유형	서비스명	소관기관	신청절차	접수기관
	의료비 지원			
	(미숙아·산전성 이상아)영유아의료비	보건복지부	방문	시군구 보건소
	(다자녀)주택특별 공급제도	국토교통부	방문	내공사
	(다자녀)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방문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금융기관
	(다자녀)도시가스 요금경감	한국가스공사	자격증명을 준비하여 방문, 팩스, 우편	관할 도시가스회사
	(다자녀)전기료감액	한국전력공사	전력공사방문, 우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할 전력공사지점
	(다자녀)난방비감면	한국지역 난방공사	인터넷 (연회 산정 후 지급), 설치지역	지역난방공사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행정안전부	방문 (가족관계 등록부 지참)	주소지 시군구

■ 서울시 다자녀 가구 감면 현황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2016년도 제27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09-01321) 심사 과정 중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감면요율 20%로 규정하였던 것이,
 - 2019.5.16.일 조례가 재차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203호, 2019.5.16., 일부개정, 2020.1.1. 시행)됨에 따라 2020.1.1.일부터 감면요율이 30%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48,907가구에 대해 연간 약 10억 39백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파악됨.

[표 4] 최근 3년간 서울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역

연 도	다자녀 가구수 (통계청 자료)	감면신청 가구수	감면신청율(%)	감 면 액 (천원)
2020	66,325	45,376	68.4	1,007,726
2021	61,777	49,246	79.7	1,061,340
2022*	미정	51,799	미정	1,046,428

* 2022년의 경우 통계청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다자녀가구 확대 시 재정부담 검토

- 2021년 기준 서울시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총 5만 6,883세대이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총 37만 2,407세대로 집계됨.

[표 5]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현황('21년 기준, 통계청)

계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434,184	372,407	56,883	4,313	581

- 물순환안전국은 감면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다자녀가구로 확대할 경우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10억 27백만원('23년 세입예산 기준) 대비 약 7.6배 증가한 77억 84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표 6] 참조)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67억 57백만원의 추가적인 세입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표 6] 서울시 다자녀가구 확대(3자녀→2자녀) 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구분		총가구수	신청 가구수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백만원)	비고
계		434,184	386,965	7,784	
확대	2자녀 가구 이상	372,407	335,166*	6,757 ²⁾	총가구수의 90% 신청 적용 시
기존	3자녀가구 이상	61,777	51,799	1,027	'23년 세입예산액

* 전체 대상 가구의 90% 신청예상

-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3)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4)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14조5)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6)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발생될 약 68

2) ○ 산출근거 : 가구당 월평균감면액 1,680원(30%)×335,166가구×12월 = 6,757백만원

※ 가구당 월평균 하수도 평균요금(5,600원)

-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¹⁾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5)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6) 「지방공기업법」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 다. (생략)
 - 2. (생략)

억원 규모의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해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입감소분을 일반회계(가족다문화담당관 일반회계 → 물재생계획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전받고 있는 상황으로,
 -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구를 확대 시 증가하는 세입감소분에 대해 관련부서(가족다문화담당관, 예산담당관)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감면할 수 있으며, 市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원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시기를 '24.1.1.일자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더불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30% 감면요율을 유지하고, 2자녀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요율로 차등화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상기 물순환안전국 의견과 같이 2자녀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 감면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45억 5백만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⁷⁾할 것으로 추계됨.

7) ○ 산출근거 : 가구당 월평균감면액 1,120원(20%)×335,166가구×12월 = 4,505백만원
※ 가구당 월평균 하수도 평균요금(5,600원)

■ 종합의견

-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
-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감면율 100분의 30과 차등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84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2월 28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감면율 100분의 30과 차등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함. (안 제34조제1항제10호)
- 나. 안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 중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의 호번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u>세 명 이상</u>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p> <p>10. (생략)</p> <p>11. (생략)</p> <p>12. (생략)</p> <p>13. (생략)</p> <p>14. (생략)</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u>세가 2명 이상인</u>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0. (생략)</p> <p>11. (생략)</p> <p>12. (생략)</p> <p>13. (생략)</p> <p>14. (생략)</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u>두 명이</u>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p> <p>11.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의 호번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10. (생략)</p> <p>11. (생략)</p> <p>12. (생략)</p> <p>13. (생략)</p> <p>14. (생략)</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u></p> <p>11.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u></p>